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우선고용 지역주민 범위 확대>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5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철현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1. 13.

3. 회 부 일 : 2025. 1. 14.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발전소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 혜택의 대상을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

현행법 제17조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1]와 주변지역[2](발전소로부터 5km반경 이내)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한정하여 고용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989년 동 법 제정 시 도입되었음.

1)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은 대체로 인구가 적고 고령층 비율이 높아 실제 취업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우선 고용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과 행정적으로는 인접하지만 5km 반경 밖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 소음, 생태계 영향 등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의 고령화 심화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의 고용 우대 범위를 확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에게 우선 고용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17조는 발전소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발전소에 근무 가능한 인력이 지방에서 감소하고 청년층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 고용 범위 확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변주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전

체로 우선 고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발전사는 더 넓은 후보자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일부 발전사(한국수력원자력[3])는 현재 대상 지역을 시군구 전체로 확대하여 제도를 기 운영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또한, 중저준위법 및 혁신도시법 등 지역적인 범위를 통해 우선 고용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사법률[4]에서도 최소 시군구 단위로 고용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문 의 처 |
| --- |
| 02)6788-5461 |

3) 한수원은 '지역모집' 전형을 통해 주변지역이 속한 시군구 지역주민(자녀 포함)의 우선고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전 건설 지정고시 당시 일정기간(3~5년) 거주한 경우는 가점까지 추가 부여
4) (중저준위법 제3조 및 제14조) 설치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자치구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지방 이전 공공기관 소재 광역시도

## [ 참고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대상 발전소 및 사업자

□ 에너지원별 발전소 현황 ※ 24년도 예산 기준

| 구 분 | | 발전소 (개소) | 사업자 (개社) | 용 량 (MW) | 발전량 (GWh) | 기본지원금 (백만원) |
|---|---|---|---|---|---|---|
| 원자력 | | 7 | 1 | 28,850 | 202,490 | 49,943 |
| 화 력 | 유연탄 | 22 | 16 | 37,493 | 200,514 | 35,668 |
| | 무연탄 | 1 | 1 | 400 | 1,677 | 503 |
| | 가 스 | 62 | 36 | 47,214 | 187,471 | 17,927 |
| | 유 류 | 6 | 5 | 951 | 1,382 | 266 |
| | 소 계 | 91 | 58 | 114,908 | 391,044 | 54,364 |
| 수 력 | | 5 | 1 | 478 | 1,119 | 2,514 |
| 양 수 | | 7 | 1 | 4,700 | 3,706 | 3,014 |
| 신재생 | 풍 력 | 93 | 80 | 2,166 | 4,065 | 2,445 |
| | 태양광 | 439 | 380 | 3,328 | 4,248 | 9,224 |
| | 소수력 | 35 | 15 | 135 | 405 | 690 |
| | 연료전지 | 50 | 30 | 949 | 6,127 | 1,297 |
| | 매립가스 | 2 | 2 | 56 | 204 | 50 |
| | 폐기물 | 22 | 21 | 222 | 818 | 520 |
| | 바이오 | 21 | 20 | 1,353 | 7,618 | 918 |
| | IGCC | 1 | 1 | 346 | 1,506 | 150 |
| | 조 력 | 1 | 1 | 254 | 424 | 84 |
| | 소 계 | 664 | 550 | 8,809 | 25,415 | 15,378 |
| 합 계 | | 774 | 611 | 128,894 | 623,772 | 125,213 |

## □ 지역별 발전소 현황

(2024년도 예산 기준)

| 구분 | 원전 | 화 력 | | | | 수 력 | 양 수 | 신재생 | | | 합계 |
|---|---|---|---|---|---|---|---|---|---|---|---|
| | | 유연탄 | 무연탄 | 가스 | 유류 | | | 풍력 | 태양광 | 기타 | |
| 서울 | - | - | - | 3 | - | - | - | - | - | 7 | 10 |
| 부산 | 1 | 1 | - | 1 | - | - | - | - | 4 | 5 | 12 |
| 인천 | - | 1 | - | 7 | - | - | - | 2 | 3 | 7 | 20 |
| 대구 | - | - | - | 2 | 1 | - | - | 1 | 3 | 2 | 9 |
| 대전 | - | - | - | 2 | - | - | - | - | 3 | 1 | 6 |
| 광주 | - | - | - | 1 | - | - | - | - | 4 | 3 | 8 |
| 울산 | 1 | - | - | 3 | - | - | - | - | 1 | 3 | 8 |
| 세종 | - | - | - | 2 | - | - | - | - | 3 | 3 | 8 |
| 경기 | - | 2 | - | 25 | 1 | 2 | 1 | 2 | 20 | 25 | 78 |
| 강원 | - | 4 | 1 | 2 | - | 3 | 1 | 26 | 77 | 13 | 127 |
| 충남 | - | 5 | - | 3 | 1 | - | - | - | 81 | 14 | 104 |
| 충북 | - | - | - | 2 | - | - | - | - | 21 | 7 | 30 |
| 전남 | 1 | 1 | - | 2 | - | - | - | 19 | 130 | 6 | 159 |
| 전북 | - | 3 | - | 1 | - | - | 1 | 4 | 16 | 12 | 37 |
| 경남 | - | 3 | - | 2 | 1 | - | 2 | 6 | 22 | 6 | 42 |
| 경북 | 4 | 2 | - | 2 | - | - | 2 | 15 | 44 | 15 | 84 |
| 제주 | - | - | - | 2 | 2 | - | - | 18 | 7 | 3 | 32 |
| 합계 | 7 | 22 | 1 | 62 | 6 | 5 | 7 | 93 | 439 | 132 | 774 |

## [참고 2] 타 법률상 고용우대제도

| 법 률 명 | 주요내용 | 실시기관 | 지원범위 |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 이주자와 주변지역주민 우선 고용가능 | 발전사업자 | 주변지역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 |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음 |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관련 기관 | 유치지역 (설치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자치구)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 채용시험 실시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 | 지방이전 공공기관 | 이전지역 (관할 광역시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채용시험 만점의 10%, 5% 가점 | 국가, 지자체, 군, 학교, 공·사기업 및 단체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채용시험 만점의 10%, 5% 가점 | 국가, 지자체, 군, 학교, 공·사기업 및 단체 |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22조) | 채용시험 만점의 10%, 5% 가점 | 국가, 지자체, 군, 학교, 공·사기업 및 단체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채용시험 만점의 10%, 5% 가점 | 국가, 지자체, 군, 학교, 공·사기업 및 단체 |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 정원의 3% 이상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정원의 3.8% 이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단·공사, 50인 이상 사업체 등 | - |

## [참고 3] 발전 공기업 지역주민 우대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 계 |
|---|---|---|---|---|---|
| 한국수력원자력* | 102 | 93 | 92 | 99 | 386 |
| 한국남동발전 | 5 | 1 | - | 7 | 13 |
| 한국중부발전 | 4 | 7 | 6 | 7 | 24 |
| 한국서부발전 | 1 | 1 | 1 | 3 | 6 |
| 한국남부발전 | 3 | - | 2 | 4 | 9 |
| 한국동서발전 | 5 | - | - | - | 5 |
| 합 계 | 120 | 102 | 101 | 120 | 443 |

* 지역모집, 지역제한 채용, 가점 등 발주법 및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채용된 전체 인원